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847
------	-----

2023. 6. 28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임규호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6.2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임규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-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시장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제정안의 개요

- 동 제정안은 서울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임.

나. 제정의 필요성

- 동 제정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밀접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서울시는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과 관련한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」를 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」을 제정(2021.3.5.)하였음.

- 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·지원하고 체육인의 인

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조례 성격을 부여한 것임.

- 현행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체육 진흥 조례」(제16조)에 따르면 ‘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지원’ 사업, ‘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’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.

〈서울특별시 체육 진흥 조례 관련 조문〉
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<개정 2022.3.10, 2022.4.28, 2023.5.22>

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
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
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
- 따라서 기존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경제와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.
- 다만 「스포츠클럽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경기도, 경상남도, 충청남·북도, 부산광역시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 운용 중임.

다. 조문별 검토

1) 용어 정의 등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의 진흥과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2)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사업(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)

-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▶공공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위탁 사업 ▶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사업 ▶스포츠클럽의 설립과 등록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▶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▶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▶우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생활체육진흥법」과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과 행정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판단임.

3)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(안 제7조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
생활체육지도자 운영현황

- 지도자 정원 : 343명 (일반지도자 178명, 어르신지도자 159명, 유소년 지도자 6명)
 - 자치구체육회 소속으로 10~18명씩 배치되어 지역 생활체육지도 활동
 - 총사업비 : 12,783백만원
 - 일반회계 : 국비50%(5,110백만원)+시비25%(2,563백만원)+구비25%(2,562백만원)
 - 체육진흥기금 : 시비 100% (2,548백만원)
- ※ '22년부터 자치구비 25% 분담

- 지도자 인건비 : 1인 보수액 2,738천원/월 (①기본급여+②수당)
 - ①기본급여 : 국·시·구비 매칭 (기본급 2,142,200원 + 법정부담금 401,800원)
 - ②수 당 : 전액 시비 (최대 596,000원 + 법정부담금 107천원)

휴일근무수당 (`12년 신설)	현장지도 활동수당 (`13년 신설)	교통비 (`16년 신설)	급식비 (`18년 신설)
1인 269천원/월 (평균 16시간) ※ 1인당 17,020 ¹⁾ 원	10년이상 10만원, 7년이상 7만원, 5년이상 5만원, 3년이상 3만원 ※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	100천원/월	130천원/월

- 생활체육지도자 1명당 평균 보수는 월 2,738천원으로, 문체부와 시·자치구가 일정 비율(국고 50, 시비 25, 구비 25)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매년 단일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어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임.
-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(호봉제) 도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책정한 기본급을 기준 호봉 급여로 하고, 매년 호봉 승급 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표에 따라 근속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음.
-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 성격 상 임금은 매년 문체부장관이 지정·통보하고 17개 시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관리도 문체부에서 수행 중이므로 시 차원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으며 서울시 권한 밖으로 볼 수 있음.

따라서 안 제7조4항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의 수립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산출내역 : ((인건비+교통비+급식비) ÷ 209시간) × 1.5배 = 17,020원(17,016.74)

4)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(안 제8조)

- 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 시·구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주기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관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구체적·심층적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5) 지원 및 위탁(안 9조부터 안 제10조)

-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,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인건비의 경우 중앙정부(문화체육관광부)가 정원을 관리하고, 정부·시·자치구가 일정비율로 제한적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.
-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세분화하지는 않고 있음.
- 다만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를 두고 또 다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나 임금, 정원 등은 매년 문체부에서 지정·통보하고 있어 불필요함.

나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 (안 제 7조제4항).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 2.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.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.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<p><u>5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align="center"><u><삭 제></u></p> <p>4. (제정안 제5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스포츠클럽 지원 사업)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3.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
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
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2.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
3.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

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)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